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514209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1. 주식회사 A(구상호 : 주식회사 B)

2. C

3. D

4. E

5. F

6. G

변론 종결2017. 3. 29.

판결 선고2017. 4.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1,246,599원 및 그 중 90,399,189원에 대한 2016. 4. 8.부터 2016. 9. 2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F, G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C, D,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G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E와 피고 F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부동산에 관한 2016. 1. 28.자 매매계약을 금 91,246,599원 및 그 중 90,399,189원에 대한 2016. 4. 8.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F, G은 각자 원고에게 금 91,246,599원 및 그 중 90,399,189원에 대한 2016. 4. 8.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9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위 피고와 보증원금 8,910만 원, 보증기한 2016. 1. 29.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 D, E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 등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5. 6. 1.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금을 연체하여 2016. 1. 2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6. 4. 8. 대출원리금 90,399,189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476,860원을 지출하였고, 370,550원의 추가보증료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E는 2016. 1. 28. 피고 F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1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F은 2016. 5. 10. 피고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6.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 무렵, 피고 E의 적극 재산으로는 1,391,579,85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 재산으로는 NH농협은행(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무 650,696,174원, 주식회사 자유코리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1,500만 원, 주식회사 부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1,500만 원, 현대캐피탈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451,508,000원과 피고 F에 대한 채무 6억 원 이상이 있어, 피고 E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 E: 자백 간주

나머지 피고들 :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NH농협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C, D, E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1,246,599원(대위변제금 90,399,189원 + 보전비용 476,860원 + 추가보증료 370,550원) 및 그 중 90,399,189원에 대한 위 대위변제일인 2016. 4.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 송달일인 2016. 9. 24.까지는 위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F, G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매매 무렵부터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에 채무를 연제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일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6. 4. 8.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가)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E가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F에게 매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F, G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농협과 피고 F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진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일을 당해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과 실제 발생한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하여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면 더 이상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156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391,570,850원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농협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650,696,17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1호증, 을 제1, 3, 4, 5,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은 2012. 4. 4. 및 같은 달 18. 피고 E에게 10억 원을 이자 연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E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F, 채권최고액 1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2016. 1. 26. 기준 피고 F의 피고 E에 대한 채권은 원리금

856,887,466원이 잔존하고 있었고, 피고 F이 2016. 1. 26. 피고 E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 피고 E는 소외 주식회사 즐거운쇼핑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즐거운쇼핑으로 하여금 2015. 11. 17. 위 매매에 따른 계약금 6,000만 원을 피고 F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실, 피고 E는 2016. 1. 26. 피고 F에게 3,776,000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E, F은 2016. 1. 26.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면서, 당일 기준 원리금을 893,111,466원(856,887,466원 + 100,000,000원 - 60,000,000원 ~ 3,776,000원)으로 산정한 사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3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대금 중 6억 5,000만 원은 피고 F이 앞서 본 농협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같음하며, 나머지 6,700만 원은 피고 F이 임대차보증금, 측량비, 세입자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같음하고, 나머지 6억 3,300만 원은 피고 F의 피고 E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며, 피고 F은 위 채권 893,111,466원 중 매매대금 6억 3,300만 원과 상계되고 남은 약 2억 6,000만 원(실제로는 260,111,466원이 남게 되나, 위 피고들은 이를 2억 6,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은 2016. 2. 5. 피고 F이 즐거운쇼핑으로부터 매매 잔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회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합계는 1,543,807,640원(= 농협에 대한 650,696,174원 + 피고 F에 대한 893,111,466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C,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F,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미림

별지